

화물차 불법증차 관련 손해배상사건 배상금 지급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42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0. .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 구 공무원이 불법 증차한 화물차와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예비비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19조(예비비의 사용)
- 2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
나. 지급 개요

- 1) 사 건 명: 화물차 불법 증차 관련 손해배상
- 2) 지급일자: 2024. 9. 20.
- 3) 지급대상: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65283 손해배상(기)
- 4) 예비비 배정액: 금70,000,000원(금칠천만원)

다. 예비비 사용 이유

- 1) 2024년 9월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 사건(대구서부 2021가단 65283)에 대한 배상금 지급

3. 추진경과

가. 예비비 사용 계획 및 승인요청: 2024. 9. 12.

나. 예비비 배정(기획예산과): 2024. 9. 19.

다. 예비비 집행: 2024. 9. 20.

- 1) 배정액: 70,000,000원
- 2) 집행액: 70,000,000원
- 3) 잔액: 0원